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6
----------	-----

제출연월일 : 2006년 6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중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별도 관리함(안 제3조제3항)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중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안 제8조)

의안 전문 : 따로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을 "장기예치기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누계잔액에 포함하여"를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p> <p>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 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③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 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장기 예치 기금액 ----- ----- ----- ----- -----</p> <p>③ -----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p> <p>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 2항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 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 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말한다.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